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전문공보담당자 검사 김병채

전화 033-660-4331

보도자료

2023. 2. 1.(수)

제목

노조활동을 빙자한 건설현장 공갈사범 구속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오늘(1. 3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지청장 서정민)은 강릉·속초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조활동을 빙자하여 수천만원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간부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노조간부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명되었음에도 강릉지역에 건설기계 노동조합이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실질적 노조원이 자신들 2명뿐인 명목상 노조를 만들고, ○○노조에 정식 가입된 단체인 것처럼 사칭함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① 피고인

- A○○(49세, □□노조 강원지부 총괄지부장)
- B○○(52세, □□노조 강원지부 △△지회 지회장)

② 공소사실 요지

- '21. 7. ~ '22. 9. 강릉·속초 지역 7개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 방법으로 공사 방해를 협박하여 전임비,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공동하여 4,100만원, AOO 단독으로 2,100만원을 갈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2

수사 경과

- '23. 1. 9. 검찰, 각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 '23. 1. 13. 법원, A○○ 구속영장 발부(B○○는 범행 자백하는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
- '23. 1. 31. A○○ 구속 기소, B○○ 불구속 기소

3

범행 수법

- 노조 사칭 및 노조활동 빙자를 통한 건설업체 압박, 공사 방해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명되었음에도 강릉지역에 건설기계 노동조합이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실질적 노조원이 자신들 2명뿐인 명목상 노조를 만들고, ○○노조에 정식 가입된 단체인 것처럼 사칭함
 - ※ 피고인들이 조직한 □□노조는, '21. 11. ○○노동조합총연맹에서 '내부 분란을 조장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소속 조합원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제명된 단체임
 - 건설현장에서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과 사람들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자노조 건설장비 사용을 압박하거나, 노조발전기금이나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였음
 - ※ 실제로는 소속 노조원이 공사현장에 근로하지 않음에도 B○○ 등을 근로자로 허위등재시킨 후 이를 근거로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음
 - 피고인들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노조활동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노조를 사칭하여 금품 갈취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해, 집단 행위에 의한 보복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금원을 지급하였음

● 영세 건설업자들을 상대로 발전기금 명목 금품 상납 요구

-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임대하는 영세 건설업자들을 상대로도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음
- 실제로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아파트 공사현장에 펌프카 2대를 임대했던 중장비 임대업자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한 후 기존 임대계약을 해지당한 사례가 있었음
- ※ 피고인들은 건설업체 현장소장에게 위 중장비 임대업자와의 계약을 중단하지 않으면 집회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압박하였음

● 노동청 고발 취하를 대가로 금품 갈취

-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장면을 촬영 후 노동청에 고발하면서, 건설업체 상대로는 고발 취하 대가로 건당 100~200만원씩 금품을 갈취하였음
- ※ 피고인들은 돈을 받은 뒤 고발을 취하하고, 노동청에 추가로 진술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 처리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행정력도 낭비되게 하였음

● 갈취한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

- 피고인들은 갈취한 대부분의 돈을 노조활동과 전혀 무관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는데, 범행기간 중 일정한 수입 없이 오로지 범행을 통해 갈취한 돈으로 생활하였음

4

향후 계획

-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함께 범리,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수사기록을 보장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앞으로도 검찰은 부당금품 요구, 노조원 채용 강요 등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임 ☐